

미 통상법안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총괄

미 의회에 계류중인 통상법안은 미국에서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의 기류를 상징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1,700억불 이상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워싱턴 및 전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교역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에 관한 입장을 재평가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제2의 일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대책이 USTR에 의하여 고려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미국 수출업자에게 현재까지 폐쇄적이었던 한국 국내시장의 개방 요구이다.

쌍무적 교역관계에서의 비상식적인 접근은 대만과의 “담배 전쟁”에서와 같이 심화되는 미국의 무역불균형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의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대신에, 한국 업계는 로

〈註〉 본 자료는 미국 통상법 입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과 이의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IRC(Intel Research Corporation) Report이다.

IRC는 정보 분석에 관한 국제적 컨설팅 회사로서 쉽게 입수기 어려운 정보의 분석, 보고 등을 행하며 미국을 위시 주요 국가의 정·재계 지도자를 위한 정치 및 경제에 관한 project를 수행한다.

IRC는 1982년에 설립, 워싱턴 교외의 McLean에 위치하며 참여 기업에게 미국의 정치, 경제, 비즈니스에 관한 동향을 단독적으로 비밀리에 입수 제공하기도 한다.

본 자료에 관한 문의는 본회 국제부(553-0941)로 하기 바란다.

비활동과 언론 매체를 통한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높아가는 미국의 불만을 진정시켜 왔다.

본 보고서는 100회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과 이러한 사안에 대한 현재 미국에서의 여러 견해들이 양국 경제에 주는 영향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

2. 배경

지난 20년간 한국은 주로 대외무역 요인에 의하여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하였다.

한국은 미국 수출의 중요한 시장(8번째 미국 수출시장)이 되었으며 동시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대한(對韓) 수출 이상으로 증가하여 전체 수입의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 무역관계는 지난 몇년간 불균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韓 무역 일람(1982~1987)

단위 : 십억불

구분	연도	'82	'83	'84	'85	'86	'87
미국 수출	5.3	5.7	5.8	5.7	5.9	2.3	
미국 수입	6.0	7.1	9.4	10.0	12.7	5.1	
Bal.	-0.7	-1.9	-4.2	-5.0	-7.6	-2.8	

*'87은 1월~4월까지의 통계임.

자료 : 상무성(수출액 : F. A. S., 수입액 : CIF 기준)

지난 몇년간, 미국의 대한 수출은 수입에 비하여 부진하여 상기표에서 보듯이 무역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1982년에서 1986년까지 미국의 대한 수출은 9%가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7% 증가하였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82년 \$ 313Mil에서 '86년 \$ 70억불로 증가하였다.

양국간의 무역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미 의회에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미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입법활동을 통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하여 미국 산업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무역 문제에 관련하여 2 가지의 사고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불공정 무역관행이 무역적자의 일부 요인이 되며 최근 달러화의 급격한 하락이 세계시장에서의 미국의 위세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고의 주류는 무역 불균형은 무역흑자를 내는 외국의 쌍무적 교역 상대국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 보호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을 막론하고, 미국이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통상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치하고 있다.

미 의회에는 통상 법안의 입법 의지가 있으며 미국 노동계나 일반 업계에도 통상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의 목표는 외국시장의 개방, 불공정무역 관행의 금지, 연구, 교육, 훈련에의 미국투자의 장려 등이다.

나아가서, 미 의회는 한국, 대만과 같이 그들의 통화를 미국 달러화에 자유롭게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통화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주장은 이를 국가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여 미국 수출가를 불필요하게 높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과 대만은 그들의 경제가 아직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환율 조정은 그들의 수출을 비경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행정부에서 최초로 레이건 대통령은 보

호무역주의에 계속 경고하면서, 미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미 행정부는 통상법안의 1987년 통과를 위하여 의회와의 타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986년 행정부가 어떠한 통상 법안도 역둘러 온 것에서 보면 상당한 방향 전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0년 1,700억불의 미국 무역적자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미국 경제 전부문으로부터 통상입법압력을 초래하고 있다.

3. 대한(對韓) 무역의 주요 방해 요소

가. 관세

한국이 1989년까지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조치를 취하였지만 대부분 제품에 대한 20%~40%의 관세 부과는 미국 관리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나. 수입규제

한국의 수입자유화 계획이 일반상품의 90%까지 자동 승인을 허용하고 있으며 1988년까지 95%선으로 매년 증가할 예정이지만, 미국의 시작은 많은 주요 관심 품목들이 아직도 금지 품목에 들어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 스포츠 용품, 건축 자재, 자동차 부품, 기계류, 농산물, 수산식품 등을 포함한다.

다. 서비스 분야의 장벽

1984년 한국 재무부는 은행 규제 자율화에 대한 2년간 작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계획 속에는 한국은행 재 할인 및 양도 가능 입금 증명서의 발행에 외국 은행의 참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외국 은행들은 국내 은행들이 하고 있는 금융 지원 업무 제공을 허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점수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미국은 현재 은행, 보험분야의 보다 많은 외국회사의 진출과 광고, 경리, 선박 그리고 다른 서

비스산업에서의 외국인 활동에 대한 제한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 환율

한국 원화는 일본 엔화나 다른 주요 통화들처럼 달러에 대하여 적절히 변동되어 오지 않고 특정한 금융 및 정책적 기준에 따라 조정되었다.

미국의 주장은 한국정부가 자국통화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미국 수출품의 가격인상을 가져와 미국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 관리들은 일본과의 경쟁과, 대일무역역조 시정을 위해서는 자국 통화를 간단히 절상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 지적소유권보호

“지적소유”라는 말은 사상, 발명 혹은 이와 관련한 제품을 의미하는데 미국은 발명가들의 권리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저작특허권 및 상표에 관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이 미국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은 미국 제품을 복사하는 국가와의 교역 시 끊임없는 불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국회에서 저작권 법안을 처리하기로 동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화학, 제약품에 대한 보호에 권리부여와 한국내 외국상품의 용이한 등록을 허용하는 상표권법 개정뿐 아니라 문학작품, 음반,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보호 등이 포함될 것이다.

바. 섬유 및 의류

한국은 미국에게 섬유, 의류제품의 두번째로 중요한 공급국가이다.

이 분야의 지난 수년간의 급증하는 교역량은 이미 미국산업의 다양화에 영향을 주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지난 해 섬유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대신에 1989년까지 매년 0.8%의 증가로 제한하는 쌍무 섬유협정을 착수하였다.

사. 철강 및 기계류

한국이나 기타 국가로부터의 철강 수입과 관련 규제 조치를 받기 위하여 1974 무역법 201조에 따라 미국 철강업체들이 제소를 행한 이후, 레이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하여 새로운 관세부과나 수입규제조치 대신에 철강수출국의 총 수출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들과 쌍무 협정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1984. 10. 1.부터 1989. 9. 3. 까지의 철강제 완제품의 대미수출을 1.9% 인상 선으로 제한할 것을 동의하였다.

아. 일반특혜관세제도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정부가 개발도상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면세 혜택을 주는 GSP수혜의 선두국가 중의 하나였다.

1985년 한국으로부터의 GSP를 통한 수입은 미국 전체 수입의 12%를 점유, 2위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한국상품 수입제한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비판에 대응하여 미 의회는 1984년에 GSP 수혜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하였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2년간의 GSP계획 검토의 결과로 미국은 한국의 수혜를 24% 감축시켰다.

자. 외국인 투자의 제한 요인

한국이 경제성장과 산업화 추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중요한 요소로 장려하여 왔지만, 미국 비평가들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의 목표와 시행을 정부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통제하기 때문에 미국 투자가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는 사치품 및 식품류는 총 산업의 5%까지로 정부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으며 전자, 자동차 그리고 기타 주요 산업 등은 20%까지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투자액이 300만불 이하이고 외국인 소유가 50% 이하이면 80%까지 자동 승인된다.

차. 미 100회 의회의 입법 현황

미 상하원 지도급 의원들은 100회 의회에서

일괄 통상법안의 통과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87. 4. 30 하원은 "1987 무역 및 국제경제정책 개선법"을 통과시켰으며 7월 21일 상원은 "1987 일괄 통상 및 경쟁력법"을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은 9월 중순부터 의회 합동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일괄 무역법안으로 미국의 상계 관세, 반덤핑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미국산업을 수입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1974 무역법 201 조항의 수입으로의 보호를 용이케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안들은 1974 무역법 301조 하에 대통령에게 부여되었던 행정부 권한의 명백한 확대를 통하여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특히 한국과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맷음말

상·하원에서 통과된 통상법안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이러한 응급조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지의 논쟁에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그러나 무역 적자의 경제적 원인이 환율의 불안정성, 제3세계의 외채부담, 서부 유럽 및 일본의 부진한 경제성장, 미국 정부의 예산 적자, 계속되는 미국의 높은 이자율 등과 같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요소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에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상법안의 배후 정치적 동기는 다양하나 그중의 하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노리는 게파르트 의원의 의사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논란많은 「초 301조」 개정안의 통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만일 "초 301조"가 상·하원 최종 조정안에 반영된다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은 확실하다.

의회에서 압력을 가하는 다른 정치적 요인은 수출 부진으로 인하여 실업사태에 직면케 될 선거구민(200만명 추산)들에 대한 배려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레이건 대통령이 도시바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일본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同 조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쌍무적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게파르트 수정안을 포함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적인 법안의 통과는 미 의회(100회나 101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

만일 1988년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보호무역주의적 입법의 통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4. 미 통상법 중 한·미 통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항 분석

가. 301조 : 불공정 무역 관행

1) 의무적 제재 조치

가) 현행

1974 통상법 301조는 무역 규제법안 중 가장 강력한 것임.

이 조항에는 미국 수출품에 대한 장벽, 지역 소유권이나 투자권리에 대한 침해 등을 포함한 불공정 수입 뿐 아니라 모든 불공정무역 관행의 광범위한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관행에 대한 대통령의 조치는 극히 무제한 적이다.

나) 하원안

하원 세입 세출 위원회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통하여 301조 하의 조사와 제재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01조를 개정하였다.

일정한 조건에서의 제재를 의무화하고 외국이 취할 수 있는 관행의 항목을 증가시켰다.

쌍무적 통상 관계에서 무역 흑자가 「과도하고 무제한적」(소위 게파르트 수정안)이라면 301조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재 조치의 종식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채택하였다.

다) 상원안

상원재무위원회는 301조 하의 제재 조치 강화에는 하원안을 앞지르고 있으며 추가 조건하의

제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많은 의무적 조사, 대통령의 권한 축소,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의 구분을 위한 절차의 강화, 조치 가능한 관행의 추가, 제재 종식 위한 새로운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노동권과 수출 목표

가) 현행

부당한 불공정무역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협정 위반, 미국의 국제법적 권리의 부정)

나) 하원안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노동권의 침해, 카르텔 결성, 수출 증가위한 계획 등 외국 정부의 조치를 위반 정도에 따라 불공정무역 관행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상원안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국가에 대한 무역 대표부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부서가 노동권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비 상업적 위험에 대한 제3세계에서의 사적 투자를 보장하는 새로운 세계 은행에 미국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3) 무역의 과도한 흑자 국가

가) 현행

대통령은 USTR의 조사에 관계없이 불공정 무역 국가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조사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나) 하원안

게파르트 수정안은 과도하고 무제한적인 무역 흑자를 가져오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금지키 위해 6개월의 협상 시한을 요하고 있다.

만일 협상이 실패하면 무제한적인 관행에 의하여 생겨난 금액에 상당하는 제재 조치가 해당 첫해에 취해진다.

다음해부터 불공정 무역거래가 계속 된다면, 매년 10%의 무역 흑자를 삭감하게 된다.

만일 협상이 이루어지고 다시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무역협정 위반(부당거래)에 대하여 301조의 형식으로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된다.

이에 대한 철회는 외국의 국제수지문제(외채)와 미국의 조치가 국가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의회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다) 상원안

상원의 「초(super)301조」는 USTR의 조사를 의무화하며 불공정 무역 장벽과 관행을 「지속적 형태」로 계속하고 있는 국가와의 협상 타결을 추구하고 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면 미국 수출의 증가를 기대하며 조사와 관련 지난 3년간의 불공정 거래에 의한 피해 보상이 실시된다.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4) 덤픽 및 상계 관세

가) 현행

현재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은 덤픽 수출(공정 시장가 이하의 판매)이나 대미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외국 국가가 취한 불공정한 시장 우위를 상쇄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나) 하원안

생산비 이하로 제3국에서 판매하는 덤픽 행위와 외국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막기 위한 세율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정기적 수입 감시제도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외국 수입물품은 덤픽과 관련있는 것으로 판명하였다.

만일 외국업체가 지난 10년간 3회이상 덤픽한 것으로 판명되면 1916 반덤핑법에 따라 민사 소송에 해당된다.

다) 상원안

덤픽에 관하여 하원안과 거의 유사함.

5) 통신

가) 현행

미국의 규제 및 1984. 1. 1 AT&T의 독점 해제로 미국의 통신시장은 외국에게 통신제품, 서비스의 일방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현재 통신부문 교역을 위한 시장 진출을 규정하는 특별법은 없다.

나) 하원안

미국 통신기기 수출 업체를 위한 충분히 경쟁

적인 판매 달성과 장벽이 존재하는 국가에서의 보조금에 관한 행정부의 다자간 혹은 쌍무적 협상을 의무적으로 추구케 하고 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관세 인상, 301조하에 부여된 권한행사, GSP수혜의 정지, 해당 국가로서의 연방정부의 구매금지 등이 있다.

다) 상원안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서 취하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쟁 기회를 가능케 하는 다자간 혹은 쌍무적인 정부의 협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협상 기한과 제재방안들은 하원안보다 더욱 엄격하다.

나. 국제투자 및 금융관련 규정

1) 환율

가) 현행

미국정부는 환율을 변경을 위하여 외국 시장에 관여할 수 있다.

나) 하원안

대통령은 경제 정책의 조정을 위하여 산업국가와의 협상 계속과 「경쟁적 환율」 달성을 위한 협상 추구를 의무화하고 있다.

낮게 책정된 외국과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쌍무희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 상원안

하원안과 유사하나 그 목표는 경쟁적 환율 대신에 환율의 안정에 있다.

또한 많은 무역 흑자를 내는 외국 국가와의 인위적인 환율 조정을 위한 쌍무 회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고정 통화

가) 현행

규정 없음.

나) 하원안

미국과의 무역에서 과도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가 흑자 요인이 되는 저 환율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재무성이 판단하도록 한다.

만일 그 국가가 환율변경 요구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

다) 상원

대통령이 자국 통화를 달러화에 연결시켜 수출 증가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저환율을 유지하는 국가와의 협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외국의 부정 행위

가) 현행

1977년에 법률화된 외국의 부정 행위 관련 법은 미국인이 사업 목적으로 외국 관리들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의 위반시에는 민사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하원안

현재의 애매모호한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외국 정부나 회사에게 미국 회사의 금품 수수 행위에 더욱 무거운 벌금을 물리며 민사 및 형사적인 처벌규정의 분리와 함께 제3자를 통한 수뢰행위의 과실의 기준을 변경하려고 한다.

다) 상원안

금품 수수행위가 직접이거나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의 소추(訴追) 행위를 허용키 위해 외국의 부정행위 관련법하의 뇌물 공여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를 변경하려고 한다.

4) 지적 소유권

가) 현행

지적 소유권은 연구, 개발, 창조 활동, 상업적 명성 같은 무형적 산물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 소유권은 특히 저작권, 상표, 기업의 비밀 그리고, 기술자료 등의 보호를 위해 법에 소유권적 기술자료를 규정하는 법 등에 의해 이의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1930 관세법 337조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미국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보호 조치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수입 물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주는 것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의하여 판명되면, ITC는 이의 수입 금지를 취할 수 있다.

나) 하원안

지적소유권 관련 제소의 경유 피해 증명 조건의 삭제를 목적으로 1930 관세법 337조의 수정을 통한 미국의 지적소유권의 외국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즉 제소 관련 최종 판정 전에 구제 조치 요구에 대하여 ITC가 신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37조의 ITC판정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무역대표부(USTR)로 이관하고 있다.

5) 미국 제품 구매법

가) 현행

1933 미국 제품 구매법 하에는 담당 부서의 장이 미국산 제품의 구매가 공중의 이익에 불일치하지 않고 가격이 불합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가격 우대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나) 하원안

미국의 제품 및 용역의 수출에 대한 구매정책에 차별을 두고 있는 국가의 업체와 미국 정부와의 계약을 금하고 있다.

그 제품이 미국에서 조립되거나 제조되며, 혹은 실제적으로 총 원가, 자재비, 그리고 공급이 미국내에서 발생하면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다) 상원안

현행법 적용.

6) 통상 법안에 대한 행정부 입장

레이건 대통령은 일관하여 그가 금년내에 승인될 법안에 기꺼이 서명할 수 있는 책임있는 비보호무역주의적 통상 법안을 요청하여 왔다.

미국이 국제경쟁을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믿고 있다고 행정부는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레이건은 통상문제를 책임있게 다룰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며 미국의 통상 문제를 서툴게 다루게 하는 입법안을 비판하였다.

그는 무역규제는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나쁜 것이며 특히 미국의 입장으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하였다.

만일 상·하원이 법안의 특정 조항에 의견일치를 보인다면 이는 행정부 견해로는 보호무역주의적인 것이며 교역 국가와의 다자간이나 쌍무협상에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아마도 1987 통상법안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것 같다.

